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 907호) /전화: 02-761-4203 /팩스*02-782-6659
담당부서: 정책연구실 안전성연구팀 담당부서장: 송자은 실장 담당자: 고정은 팀장 e-mail: jenko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5-182호

시행일자: 2024.5.29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조:

제목: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」 일부 개정고시(안) 재행정예고 의견
조회의 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-2567(2024.5.28.)호 관련입니다.

3.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용기·포장 등에 접자 등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대상 의약외품,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을 [붙임1]과 같이 재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[붙임3]의 양식에 따라 2024년 6월 3일(월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: jenko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. 1부.

2.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」 검토 의견서(양식).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